

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61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파주시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사업장 증가에 따른 각종 노사분규에 법률적 자문을 받아 원활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하고자 하며,
- 현재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무행정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해석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,
- 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 설립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조합단체교섭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아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파주시의 고문공인노무사제도를 운영하여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안정에 도모하고자함.(안제1조)
- 나.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노·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(안제2조)
- 다. 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위·해촉 및 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(안제3조)

파주시 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(이하“고문노무사”라 한다)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자문범위)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

1.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
2.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
3.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·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
4. 시의 노동관계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

제3조(위촉 및 해촉)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인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

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

1. 사임의사가 있을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
3.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4.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

제4조(고문노무사의 임기)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수 있다

제5조(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)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,000원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

② 고문료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지급한다

③ 월정고문료외에 노·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소관 실·과·소		기업지원과 ☎ 940-4551 ~ 8		
입 안 자	기업지원과장	이	한	원
	실업대책팀장	노	정	배
	담 당 자	이	성	용

1. 파주시고문고인노무사운영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법률적 자문을 받아 원활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하고자 하며
- 현재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무행정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해석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
- 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 설립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조합단체교섭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아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파주시의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안정에 도모하고자 함(안 제1조)
-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위·해촉 및 고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□ 검토내용

-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“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” 고한 규정에 의거 제정코저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하며
- 최근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과 단순 노무직의 집단행위등 노조활동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점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일반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노사분규의 조정·개입 등 그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고문 공인 노무사의 운영이 긴요하다고 사료됨
- 조문 배열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목적과 자문의 범위, 위·해촉에 관한 사항, 예산을 수반하는 고문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보아지며
- 참고로 일반 업무에 관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음을 보고 드림.